

의안번호

5·7

제목 : 대전 도시계획 시설 결정

-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-

제출년월일 : 1994 년 월 일

제 출 자 : 대전직할시장

□ 제출 사유

- 대전직할시 고시 제22호(93. 2. 25)로 구역 결정 고시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, 일부 불부합된 부분에 대한 구역 경계조정 및 세부시설을 결정코자
-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□ 주요 골자

- 시 설 명 :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변경 및 세부시설 결정
- 위 치 :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, 사정동 일원
- 면 적 : 298,760m²
- 도시계획용도지역 :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
- 신 청 자 : 대전직할시 중구청장

□ 추진 경위

- 1993. 2. 25 :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결정(대고 제22호)
- 1994. 9. 30 :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서 제출
- 1994. 11. 4 ~ 11. 19 (14일간) : 주민 공람 공고

□ 도시계획결정 입안 내역

○ 구역 결정 조서

시설의 명칭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토지구획정리 사 업	사정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	대전. 중구. 사정 동, 산성동 일원	325,341	△ 26,581	298,760	

○ 세부시설 결정 내역

- 도로

구 분	류 형	폭 원(㎜)	노 선 수	연 장(㎜)	면 적(㎡)	비 고
계			67	9,308	106,083	
데 코	3	25	2	1,765	47,901	
중 로	소 계		3	609	6,537	
	1	20	1	195	2,357 (3,917)	
	2	15	2	414	4,180	
소 로	소 계		62	6,934	51,645	
	1	10	2	232	2,385	
	2	8	40	4,640	37,631	
	3	6	20	2,062	11,629	보행자 전용도로 포함

- 주 차 장

구 분	시 설 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m ²)	비 고
계				1,849	
신 설	주 차 장	노외주차장	중구 사정동 514-1대 일원	1,155	
"	"	"	중구 사정동 512. 담 일원	694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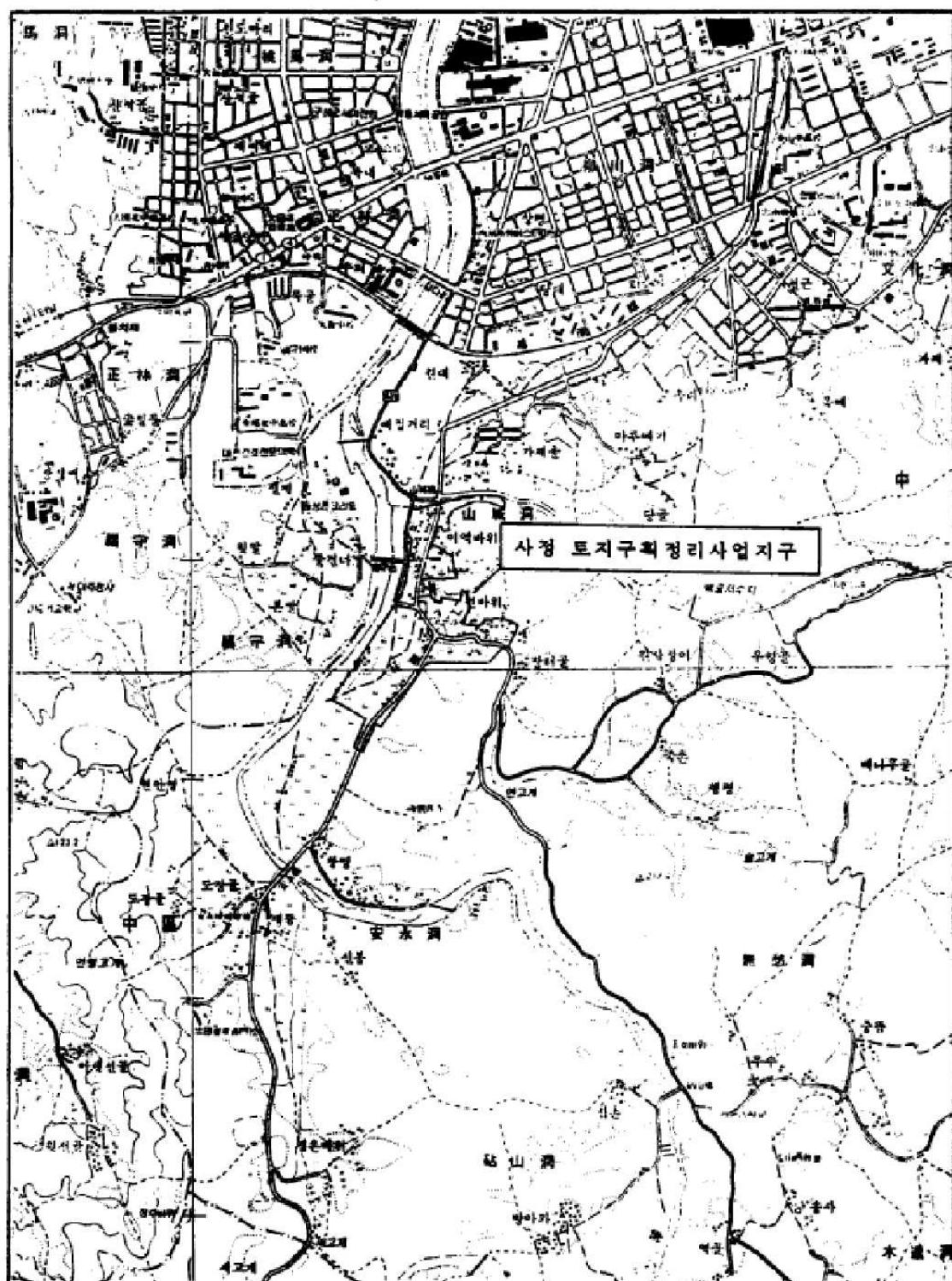
- 공 원

구 분	시 설 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m ²)	비 고
계				8,964	
신 설	공 원	어린이공원	중구 사정동 455-6 일원	3,849	
"	"	"	중구 사정동 400-1 일원	2,542	
"	"	"	중구 사정동 500-1 일원	2,573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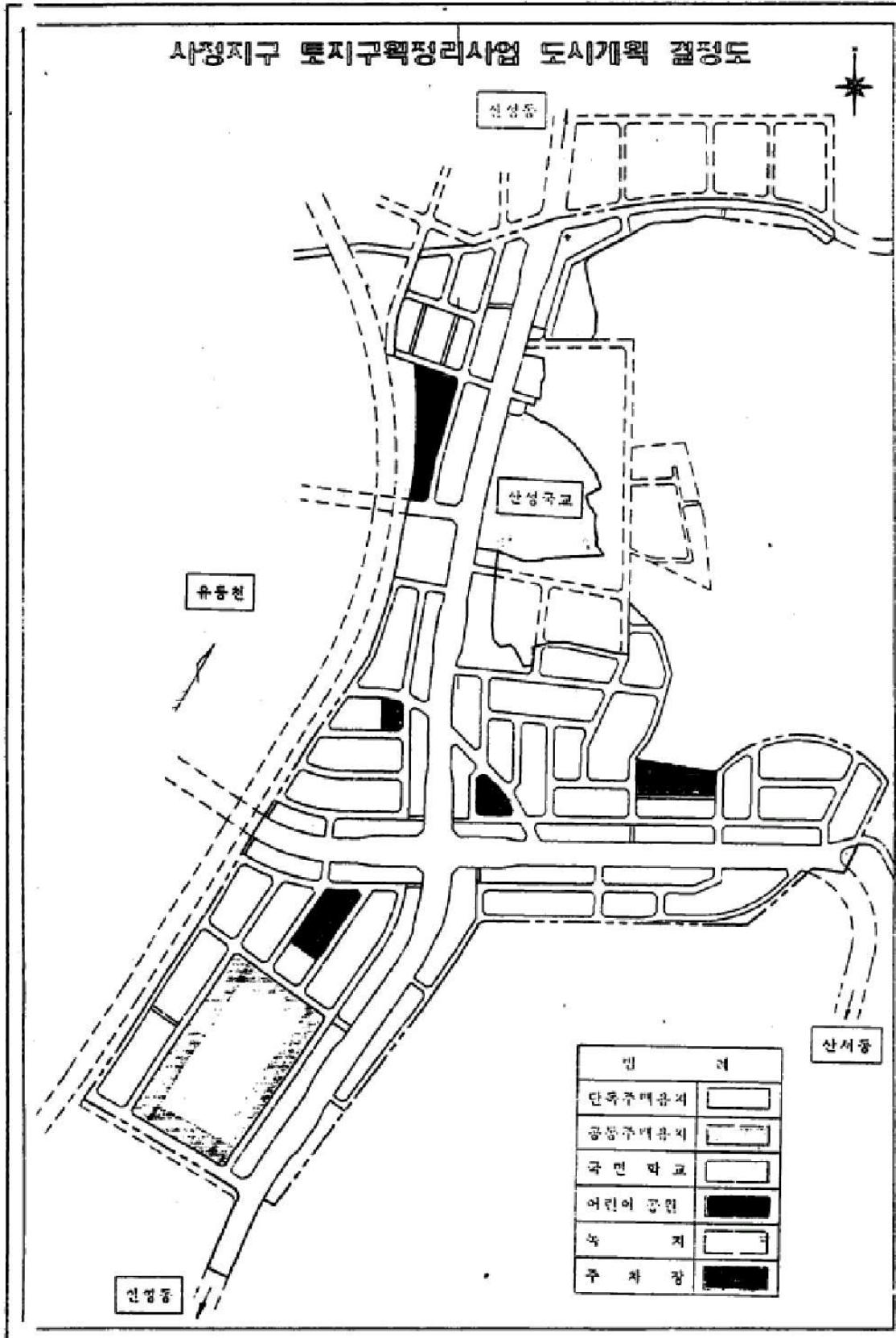
- 학 교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변 경	학 교	산성국민학교	사정동419번지 일원	15,110	△ 338	14,772	

위 치 도



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도



大田都市計劃施設(沙亭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)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件

審　　查　　報　　告

1994. 12. 26.

產業建設委員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 : 1994. 11. 28. 大田直轄市長
- 나. 回附日字 : 1994. 11. 29.
- 다. 上程日字 : 第3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
第5次 產業建設委員會 (1994. 12. 26)
上程, 質疑, 審查, 議決.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都市計劃局長 李秉讚)

가. 提案理由

- 大田直轄市 告示 第22號 ('93. 2. 25)로 區域決定 告示된 沙亭
地區 土地區劃 整理事業에 대하여 일부 不符合된 部分에 대
한 區域境界 調整 및 細部施設을 決定코자
- 都市計劃法 第11條 및 同法 第12條 規定에 依據 地方議會의
意見을 聽取코자 하는 것임.

나. 主要內容

- 施設名 : 土地區劃整理事業 區域變更 및 細部施設 決定
- 位 置 : 大田直轄市 中區 山城, 沙亭洞 一圓
- 面 積 : 298,760m²
- 都市計劃 用途地域 : 一般 住居地域 및 自然綠地地域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張 기 현)

가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: 앞의 內容과 같음.

나. 檢討意見

- 沙亭地區 土地區劃 整理事業은 '93. 2. 25. 大田直轄市 告示 第22號에 依據 土地區劃 整理事業區域으로 決定 告示한 후 '94

年 11月 住民供覽 公告를 거친 후 都市計劃施設을 決定코자 都市計劃法 第11條 및 同法 第12條 規定에 依據 議會의 意見을 聽取코자 하는 內容임.

- 當該 地域은 現在 用途地域上 一般 住居地域 및 自然綠地地域으로 自然發生的인 集團聚落形態의 不良住宅으로 이루워진 地域으로서 無秩序한 都市開發을 未然에 防止하고 저렴한 費用에 의한 宅地開發이 可能토록 하여 公共施設을 事前에 計劃的으로 確保, 快適한 生活環境을 造成하는 동시 既 開發地와의 合理的인 都市開發을 誘導하려고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써

- 開發財源은 開發에 따른 利益을 직접 받게 되는 土地 所有者에게 負擔시키므로서 開發財源을 自體的으로 確保하여 都市 基盤施設의 整備 擴充 및 住居環境 造成과 土地利用의 效率的 提高를 위해 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本 事業은 開發趣旨에 合當하다고 判斷이 되는바, 일부 不符合된 部分에 대한 區域境界調整 및 細部施設을 決定코자 하는 沙亭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에 대한 都市計劃施設 決定은 計劃대로 施行함이 가할 것으로 思料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없 음

5. 討論要旨

없 음

6. 小委員會 審查內容

없 음

7. 少數意見의 要旨

없 음

8. 審查結果

原案可決

9. 其他 必要한 事項

없 음